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20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승원 · 이건태 · 백혜련
권철승 · 염태영 · 김종민
복기왕 · 강준현 · 임호선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및 임대유통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보다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및 임대유통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회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품업자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상품수령일 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적용한다.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 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